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688 발의연월일: 2025. 3. 6.

발 의 자: 박덕흠 • 이헌승 • 박정하

고동진 · 김성원 · 최은석

김소희 • 윤영석 • 박상웅

김민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 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.

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 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 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,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.

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·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신설).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2(체육회 회장 등의 결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·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체육회·장애인체육회의 각 회원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 - 2. 「형법」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3. 각 단체의 정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·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체육회·장애인체육회의 각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체육회 회장 등의 결
	격사유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
	회・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
	체육회 · 장애인체육회의 각 회
	원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.
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	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
	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
	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
	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
	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
	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
	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
	<u>사람</u>
	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
	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
	따른 성폭력범죄
	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
	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
	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
	상 성범죄
	<u> </u>

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 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 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. 각 단체의 정관에 따른 임원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